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2004년 8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04. 8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7쪽

환경정책실	정희석 과 장	전화	02-2110-6962
환경보건정책과	이지윤 사무관	(메일)	jeeyoon@me.go.kr

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

- ◇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및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지정
- ◇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와 사업장별 공개(2008년부터 시행)
- ◇ 화학사고 대비·대응기능 강화
- ◇ 유독물 등의 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

- 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8월 17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 동 법률 개정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제정되었으며,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전문개정('96. 12)을 거쳐, 이번에 다시 전문개정함으로써 국제수준에 부합한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.
- ☐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배제하였던 「농약관리법」 상의 "원제 및 농약"에 대한 배출량조사,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의한 "독성가스"의 배출량조사, 사고대비물질지정 등에 대해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- 둘째, 화학물질 제조·수입시 당해물질이 신규화학물질,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「화학물질확인」 제도가 도입되었다.
- 셋째, 화학물질의 유해성(hazard)은 물론 노출에 의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(危害性)도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. 그동안에는 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을 심사하여 유독물, 관찰물질로 지정하는 유해성 심사제도만 운영되었다.
 -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“취급제한·금지물질”로 지정하거나 환경기준의 제·개정 등 위해성관리를 시행하게 된다.
- 넷째, 그동안 지역별, 업종별, 물질별 등으로 공개하여 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
 - 배출량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. 배출량조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,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다섯째,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·관리하게 된다. 동 물질의 취급자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사고대비의무가 부여되며, 정부는 화학사고 예방·대비·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.

- 그동안에는 연간 2천 톤 이상의 유독물영업자에게 자체방제계획 수립의무 등 사고대비의무가 부여되었으나, 법률 개정예 따라 사고우려가 극히 낮은 물질의 취급자에 대한 사고대비의무는 면제된다.

○ 여섯째, 유독물의 수출·입시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하고, 수입시에는 최초 수입시 1회만 신고 하며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.

○ 일곱째,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천 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증액하였다. 기타 동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(현행 3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)으로 강화하였다.

□ 환경부는 금번 법률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는 완화하되,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, 화학사고 대비·대응체계 정비 등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, 규정위반에 대한 엄격한 벌칙적용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기반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

〈붙임〉

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

1. 개정이유

-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
-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이행하여 기업체의 편의도모
-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저감을 위하여 사고대비·대응기능 강화
 - 안전관리종합대책('00.9), 테러대비 정부종합대책('01.11)

2. 추진경위

- 입법예고('03. 6. 12~7. 2)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('03. 12)
- 법제처 개정안 심사 ('04. 3.23~8.2)
- 차관회의 수정의결 ('04. 8. 12)

3. 주요 개정내용

가. 농약(농약관리법), 독성가스(고압가스안전관리법) 등의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(제3조)

-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배출량조사(농약, 독성가스), 유해성심사(독성가스), 사고대비물질지정·관리 등의 제도 적용
-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급시설관리 규정은 적용배제

나.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 폐지 및 「화학물질확인」 제도 전면 도입(안 제9조)

- 화학물질 제조·수입시 당해 물질이 신규물질, 유독물 등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확인(화학물질확인)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
 - 사업자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, 화학물질 유통시 준수 하여야할 제조·수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
 - 현행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에 따른 '성분내역서 제출의무'가 기업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기업활동 지원
- ※ 현행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는 사업자가 화학물질확인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임의제도로 전환

다.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창구 일원화(안 제11조)

- 현재 환경부와 노동부(산업안전보건법)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유해성심사의 신청서 접수 및 통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

라.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 근거 마련(안 제17조)

- 현재 지역별, 업종별, 물질별 등으로 통계 처리하여 공표하는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다만,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, 시행 시기도 2008년 1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준비기간 부여

마. 유독물, 관찰물질의 제조·수입신고 제도 개선(안 제19조, 31조)

- 유독물 수입 및 관찰물질 제조·수입 신고제도의 개선
 - 유독물 등의 수입자가 예상 수입량 등을 매년 신고토록하던 것을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,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 완화

-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하되, 로테르담협약(PIC협약)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협약대상물질(취급제한·금지물질 포함)은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

※ 로테르담협약(PIC협약) : 특정유해화학물질 수출입시 수입국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제협약('04. 2월 발효)

바. 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및 취급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(안 제 18조 및 제32조)

- 화학물질의 유해성(독성 등)은 물론 노출 정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수단을 결정하는 「위해성평가」 제도 도입
-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·관리
 - 현재는 유독물중 유해성이 특히 큰 물질(현행 “취급제한유독물”)만 취급제한을 할 수 있으나, 법률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낮으나 잔류성 또는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 근거 마련

사. 화학사고 대비·대응기능 강화

- 사고대비물질 지정제도 도입(안 제38조 및 안 제42조)
 -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, 화학사고 예방·대비·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개발·DB화하고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
- 사고의 전파 및 사고후 영향조사에 의한 조치(안 제40조 및 안 제 41조)
 -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및 사고접수 기관의 관계기관 통보, 지자체장의 환경부장관 보고 등 사고전파체계 구축
 - 사고후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, 복구 및 사후 조치 관련 규정 신설

아.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기반 마련

-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수입·제조·사용 등 취급과 관련한 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(안 제46조)

※ 유독물 수입신고 등 사전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(안 제19조 등)